

---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2022. 12.

 국악방송

# || 목 차 ||

I. 인권영향평가 목적 .....	1
II. 인권영향평가 개요 .....	1
III. 인권영향평가 종류 .....	2
IV.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	3
V. 인권영향평가 결과(세부) .....	5
VI. 인권영향평가 전문위원 평가 .....	9
VII. 행정사항 .....	12

(붙임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붙임2)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I 인권영향평가 목적

- 우리 기관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권경영 발전 도모

## II 인권영향평가 개요

- [평가근거] 인권경영 매뉴얼,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
- [평가기간] 2022.12.13.(화) ~ 22.(목)
- [평가내용]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담당자 체크리스트 1차 평가 → 외부위원(전문가) 2차 평가 →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

### 【 인권영향평가 개별지표 평가표 】

구 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 수	100%	50%	0%	평가 제외	
	분야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답변에 따라 비율로 점수 계산				

### 【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평가표 】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평 점	100~90점	90점 미만~80점	80점 미만~70점	70점 미만~60점	60점 미만

- ※ 평가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 \* (정보없음) 지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정보가 없는 경우
- \*\* (해당없음) 우리기관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 III | 인권영향평가 종류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체계,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고객관리 등에 대한 평가
- (지표구성) 8개 분야, 23개 항목, 95개 지표

평가 분야	항목/지표	평가 분야	항목/지표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 / 23개	산업안전 보장	4개 / 19개
고용상의 차별 금지	3개 / 14개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개 / 5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개 / 4개	정보 인권 보호	1개 / 5개
강제노동의 금지	3개 / 12개	직원 인권 보장	4개 / 13개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1) 콘텐츠 제작 관리

- 특정 사업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가
- (지표구성) 4개 분야, 13개 지표

평가 분야	지표
외부인력 차별금지	5개
방송인권 보호	2개
재산권 보호	4개
사업고객 정보 보호	2개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2) 방송심의

- 특정 사업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가
- (지표구성) 2개 분야, 6개 지표

평가 분야	지표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	3개
민원인 인권 존중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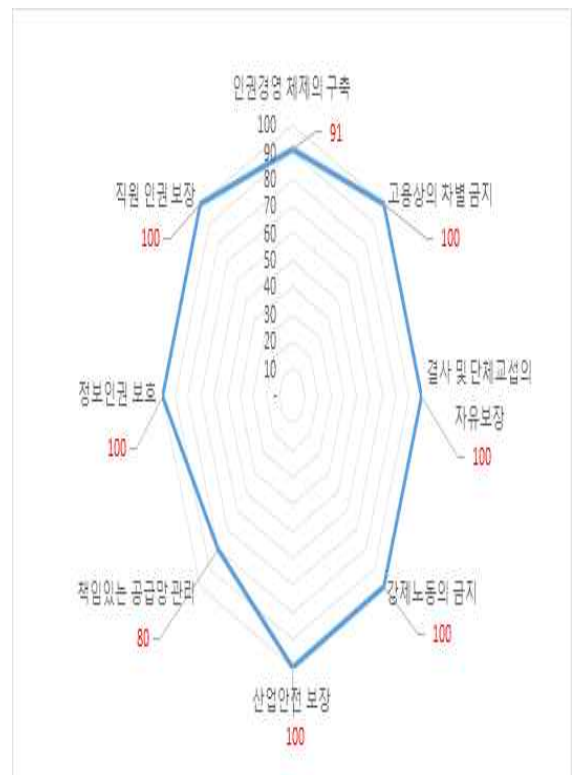
## IV

## 인권영향평가 결과(요약)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는 96점으로 가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년 85점(나), 20년 74점(다))

연번	분야	평점	등급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1점	가
2	고용상의 차별 금지	100점	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점	가
4	강제노동의 금지	100점	가
5	산업안전 보장	100점	가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80점	나
7	정보인권 보호	100점	가
8	직원 인권 보장	100점	가
-	평균 점수	96점	가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콘텐츠 제작 관리)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는 86점으로 나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인권 보호’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년 83점(나), 20년 76점(다))

연번	분 야	평점	등급
1	차별금지	80점	나
2	방송인권 보호	75점	다
3	재산권 보호	88점	나
4	사업고객 정보 보호	100점	가
-	평균 점수	86점	나

##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방송심의)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는 83점으로 나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 민원인 인권존중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21년 83점(나), 20년 75점(다))

연번	분 야	평점	등급
1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	83점	나
2	민원인 인권 존중	83점	나
-	평균 점수	83점	나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5개 항목, 2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야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인권존중 정책선언	4개					100점	가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3개	1개				88점	나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4개					100점	가
인권경영 성과	5개					100점	가
구제절차 마련	3개	3개				75점	라
<b>평균 점수</b>	<b>19개</b>	<b>4개</b>	<b>0개</b>	<b>0개</b>	<b>0개</b>	<b>91점</b>	<b>가</b>
○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집단과의 협의 과정 보완 필요 ○ 전반적인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내용 보완 필요							

② 고용상의 차별 금지(3개 항목, 14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야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고용상 비차별	5개					100점	가
고용상 남녀 비차별	6개					100점	가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4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 급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1개 항목, 4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야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4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4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현재 기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되어서 운영 중이며, 22년 최초 단체협약 체결 완료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통로로 소통하며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 중							

④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3개 항목, 12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강제노동 금지	6개					100점	가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1개					100점	가
연소자 고용 금지	5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2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해 강제노동, 연소자 고용을 하지 않음. ○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의 계약이행확약서에 인권과 윤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⑤ 산업안전 보장(4개 항목, 19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작업장 안전	6개					100점	가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5개					100점	가
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등	5개					100점	가
산업재해 피해자근로자 지원	3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9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 보건관리가 이뤄지고 있음 ○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에 모성보호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							

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2개 항목, 5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3개					100점	가
모니터링 실시		2개				50점	마
<b>평균 점수</b>	<b>3개</b>	<b>2개</b>	<b>0개</b>	<b>0개</b>	<b>0개</b>	<b>80점</b>	<b>나</b>
○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인권과 윤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 다만,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방안 검토 필요							

⑦ 정보 인권 보호(1개 항목, 5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정보 인권 보호	5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5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90점</b>	<b>가</b>
<p>○ 그룹웨어 공지사항 및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업무지침 등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p> <p>○ 이해관계자에게도 각종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p>							

⑧ 직원 인권 보장(4개 항목, 1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아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폭력예방	3개					100점	가
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4개					100점	가
일·가정 양립	2개					100점	가
휴식권	4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13개</b>	<b>0개</b>	<b>0개</b>	<b>0개</b>	<b>0개</b>	<b>100점</b>	<b>가</b>
<p>○ 관련 규정 및 교육을 통해 폭력예방,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가족친화 인증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문화조성과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됨</p> <p>○ 그룹웨어 내 게시를 통해 업무시간 외 연락 금지 등 휴식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p>							

##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 ① 콘텐츠 제작 관리(4개 분야, 13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야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차별금지	3개	2개				80점	나
방송인권 보호	1개	1개				75점	가
재산권 보호	3개	1개				88점	나
사업고객 정보 보호	2개					100점	가
<b>평균 점수</b>	<b>9개</b>	<b>4개</b>	<b>0개</b>	<b>0개</b>	<b>0개</b>	<b>86점</b>	<b>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력 차별금지에 있어 작가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 필요</li> <li>○ 방송심의규정 등에 방송인권 보호 관련 내용 포함 검토 필요</li> <li>○ 콘텐츠 제작 수행 인력 대상으로 저작권, 재산권 등 관련 교육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필요</li> </ul>							

### ② 방송심의(2개 항목, 6개 지표)

항 목	예	보완 필요	야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평점	등급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	2개	1개				83점	나
민원인 인권 존중	2개	1개				83점	나
<b>평균 점수</b>	<b>4개</b>	<b>2개</b>	<b>0개</b>	<b>0개</b>	<b>0개</b>	<b>83점</b>	<b>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li> <li>○ 협찬방송규정에 과도한 광고효과 방지위한 명시적인 조항 신설 검토 필요</li> <li>○ 민원인 전화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고객 답변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시스템 필요</li> </ul>							

## □ 위원별 전문분야 선정

○ (평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윤리인권경영위원 중 외부위원 평가

NO	평가 분야	항목수	지표수	평가위원	
1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	23개	강전애
2		고용상의 비차별	3개	14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개	4개	최미숙
4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금지	3개	12개	
5		산업안전 보장	4개	19개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2개	5개	
7		정보 인권 보호	1개	5개	
8		직원 인권 보장	4개	13개	
1	주요사업	차별금지	1개	5개	남택신
2		방송인권 보호	1개	2개	
3		재산권 보호	1개	4개	
4		사업고객 정보 보호	1개	2개	
5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	1개	3개	
6		민원인 인권 존중	1개	3개	
합 계		29개	114개	-	

## □ 위원별 평가 의견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결과(보완사항)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p>○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인권경영 추진체계'상 단계별 과제를 살펴보면 '구제절차 실행 및 공개'가 있음. 이 중 '인권침해 발생시 처리절차'를 보면 ①처리기간 명시 필요, ②'인권경영담당부서장'이 '단독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당해 보임 ③'위원장'이 '승인'해야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은 부적당해 보임 ④'공개'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p> <p>○ 또한 ⑤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 조정 등에 대한 규정도 추가할 필요</p>

	<p>가 있음 ⑥피해자가 형사고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 사내 CCTV 녹화본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민한 문제로는 피해신고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됐던 직원이 또다시 ‘인권침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의논이 필요함</li> <li>○ 결과적으로 사안 발생시 기 공지된 처리절차가 애매한 경우 더 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최대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처리절차 개정 과정은 업무담당부서에서 노조대표 등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li> </ul>
<p><b>2. 고용상의 차별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의견 없음</li> </ul>
<p><b>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입, 노조계시관 지원 등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 보장과 편의지원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됨.</li> <li>○ 노사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여 현안을 원활히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됨.</li> <li>○ 집단적 노사관계의 두가지 축인 노동조합활동 보장과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li> </ul>
<p><b>4.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 범위를 넘는 요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자유로운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능동적, 자율적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됨.</li> <li>○ 협력사와 인권경영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실제로 협약서가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li>○ 연소자고용금지 및 청소년고용시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됨</li> </ul>
<p><b>5. 산업안전 보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안전 및 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임.</li> <li>○ 코로나관련 감지기설치 등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li> <li>○ 임신부보호를 적법하고 하고 있다 사료됨. 다만,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항목을 추가해 주셨으면 함.</li> <li>○ 장애인의 경우 이동문제뿐 아니라 고용의무,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실효성있게 진행하는 것이 유효하다 사료됨,</li> </ul>
<p><b>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가 협약서대로 협력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적법하게 이행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됨.</li> </ul>
<p><b>7. 정보 인권 보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없음. 현재 국악방송은 그룹웨어 공지사항 및 게시관 활용을 통해</li> </ul>

	<p>경영에 관련된 정보 및 활동을 직원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정보보완업무지침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관련지침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p> <p>○나아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경영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실하게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고시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등도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p>
<p><b>8. 직원 인권 보장</b></p>	<p>○문제없음, 현재 국악방송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과 법정외부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인권보장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심의위원회 등의 자체 제도적 보장 창구를 두고 있음.</p> <p>○나아가 재발방지 조항과 예방지침을 사전에 구비하고 있어 자체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대해 성관련 비 위 발생시 구제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p>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평가결과(보완사항)
<p><b>1. 콘텐츠 제작 관리</b></p>	<p>○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다만 보완필요로 적시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6조1항의 경우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해야 함에도,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연령의 내용만 기재되고 있어 나머지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의 내용이 미비한 점이 아쉬움.</p> <p>○또한 외부 인력에 대한 동종 업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역시 빠져있음. 다만, 이는 국악방송의 문제라기보다 표준계약서가 보다 폭넓게 신장한 인권 보호 가치 등을 담지 못한 문제로 판단되므로 약간의 보완만을 요함.</p>
<p><b>2. 방송심의</b></p>	<p>○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나, 협찬 고지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지표에 대해 명확하게 관련 규정의 조항이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p> <p>○협찬방송규정 제3조 관련규정의 준수 조항은 현재 국악방송은 협찬고지를 함에 있어 방송위원회에서 정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도 국악방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신장된 관련 의식의 향상에 못미치는 규정의 문제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 및 관련 규정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인권영향평가 전체 평가 공유 및 결과보고 심의, 의결
  - 개선방안 도출, 구제절차 수립 등 후속 조치 진행
  - 2023년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에 해당 내용 반영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공개

- 기관 홈페이지, 경영공시 시스템(알리오) 등에 인권영향평가 결과공개

- 붙임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1부**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1부. 끝.**